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2호로 2023년 8월 11일 김지연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신설·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속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신설·확대(안 제5조)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장기재직 특별 휴가 5일 부여 신설
- 2)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30일로 확대

나.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신설·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의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구의회는 14곳¹⁾이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구의회는 14곳²⁾이며, 우리 구 집행기관 또한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부여함에 따라 직원 간 형평성 제고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및 별표2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3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2)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